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08. 8. .
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소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을 종전 “5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상향하였으나, 안 제8조제2항에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두었으므로 종전대로 규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8조제2항 중 소위원회 구성 인원을 “20명 이내”를 종전대로 “5인 이상 15인 이내”로 수정

3. 참고사항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소위원회 구성 인원을 “20명 이내”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을 종전대로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8조(소위원회등) ① (생략) ② <u>소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 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인원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8조(소위원회등) ① (원안과 같음) ② <u>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15인 이내 로 구성한다.</u> ③ ~ ④ (원안과 같음)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50인”을 “70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과장”을 “심의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장은 제3조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임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2항 단서·제9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 입찰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원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 단서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도로과 도로행정담당”을 “심의 소관업무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